

# 국제법무 연구와 인터넷 블로그의 활용

박 환 일\*

## 1. 미네르바가 던져준 교훈

금융위기 상황이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었던 2008년 하반기에 국내외 네티즌 사이에 최대의 스타로 떠오른 사람은 한국에서는 미네르바, 미국에서는 루비니 교수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들 파워 블로거(Power Blogger)는 인터넷에 글을 한 번 올렸다 하면 즉각 네티즌들의 페이지 뷰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취재에 나서고 심지어는 정부 당국자까지도 반응을 보일 정도였다.

미네르바의 경우 개인 블로그가 아니라 주로 다음 포털의 토론광장인 아고라에 글을 올렸다. 그가 작년 말 외환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올린 글이 문제—公益을 해할 목적으로 虛偽事實을 유포하여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2억 달러를 더 썼음—가 되어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기소한 박대성이라는 전문대 출신의 일정한 직업도 없는 30대 젊은이가 과연 미네르바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인터넷 자료검색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독학으로 경제학을 공부하였고 해외근무는 커녕 금융기관에서 일해 본 적이 없을지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간접적이거나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갖출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에서도 세간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이 점을 다각적으로 검증했다고 한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서 서게 된 성균관대의 김태동 교수는 TV 방송 인터뷰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네르바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문가도 하기 힘든 중요한 예측을 많이 맞추어 현재 가장 뛰어난 우리의 경제스승이 되었다. 경제예측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4년 하는 동안 한은의 우수한 인재들이 얼마나 예측에 노력을 집중하는가를 보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이 틀리는가를 보았다.

그런데 미네르바는 10월 하순 어느 날 환율이 1500원으로 폭등할 거라고 전망했고, 모국책은행이 인수작업을 벌이던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투자은행이 무너진다고 그 며칠 전

---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국제법무대학원 부원장, 법학박사.

에 정확히 예측했다.

저널리즘에서는 미네르바를 둘러싼 의혹이 난무했다. 대부분 그러한 예측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국내에서 일류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유학하였거나 현지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50대의 외환/증권맨일 것”이라고 단정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박 씨를 진짜로 믿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심지어 모 시사월간지에서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내세워 가공의 인터뷰 기사를 신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박 씨가 미네르바와 동일인물이라고 해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다. 지적인 활동 특히 예측(forecasting)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학력이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좋은 학벌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금융시장’과 같이 특정 분야를 깊이 파고들고 사색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확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현상의 밑바닥에 흐르는 추세를 파악하고 좌우 눈치 보지 않고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미네르바는 보여준 것이다. 비록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멘터(mentor)가 없더라도 인터넷 상으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찾을 수 있다면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2. 미국의 루비니 교수와 라비 바트라 교수

한국에 Doomsayer(미래의 재난을 예언하는 사람)로서 미네르바가 있었다면 미국에는 뉴욕대(NYU)의 루비니 교수와 서던메쏘디스트대(SMU)의 라비 바트라 교수가 있다.<sup>1)</sup> 미네르바는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익명의 도구를 이용해 콤플렉스를 해소하려는 듯한 욕설과 인신공격적인 언사를 늘어놓았지만, 이들 교수는 외국인<sup>2)</sup>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류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적중도 높은 경제예측을 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국제통상/금융법무를 전공하고 이 분야의 논문을 쓰고자 한다면 이 두 학자의 블로그/홈페이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그가 예측했던 금융위기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2004년부터 RGE Monitor라는 웹사이트<sup>3)</sup>를 운영해 왔다. 그는 정치·경제 전문가

1) 루비니 교수는 전세계의 금융위기가 아직도 최악의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일례로 현재 68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S&P500 지수의 경우 2008년에 38% 폭락하고 올 들어서만 25% 하락하였는데 앞으로 몇 달 안에 600선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1959년 이스탄불에서 태어난 이란계 유대인 경제학자이고, 라비 바트라 교수는 1943년 인도 펀잡주에서 태어나 인도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쳤음에도 30세에 SMU 정교수가 된 예언자적 풍모를 가진 경제학자이다.

들과 팀을 이루어 자산운용업계, 금융계, 정계, 학계에 심층분석된 금융경제·국제정치 전망기사(ahead-of-the-curve global economic insights)를 유료로 제공한다. 그의 웹사이트는 글로벌하게 파고들 뿐만 아니라 내용도 매우 알차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그의 최근 논문과 칼럼을 다운로드 받아 읽어볼 수 있게 해놓았다.

라비 바트라 교수의 홈페이지<sup>4)</sup>는 RGE 모니터에 비하면 엉성해 보이는 해도 페이지마다 예언자적인 분위기가 넘쳐난다. 이를 보면 그가 공산주의의 붕괴를 예언한 대목이 그러하다.

1978년 용감하게도 공산주의의 붕괴를 예측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붕괴」(*The Downfall of Capitalism and Communism*) 원고를 출판하기 위해 10 곳이 넘는 출판사를 돌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냉전상황이 최고조에 달했던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예측은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비로 출판했다. 이 책에서 2000년까지 공산주의가 붕괴하고 2010년까지는 자본주의도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고 소수의 사람만이 찬동을 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 책이 발간된 지 10여 년이 지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급기야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와해되자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조롱과 찬동의 비율이 역전된 것이다.

그가 2007년에 출간한 저서 「뉴 골든 에이지—미 비즈니스 제국의 몰락, 그 다음 세계」 역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 바트라 교수는 인도의 사상가인 사카르(Prabhat Ranjan Sarkar)의 ‘社會週期論’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는 그 시대를 주도하는 지배계층에 따라 주기적으로 노동자(Laborer) 시대→전사(Warrior) 시대→지식인(Intellectual) 시대→탐획자(Acquisitor)시대→노동자 시대로 끊임없이 순환(cycle)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현재 탐획자 시대와 노동자 시대가 혼재한 사회이며, 대부분의 나라가 여전히 탐획자 시대의 특징이 남아 있으면서 노동자 시대로는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탐획자와 노동자 시대는 2009~2016년까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전사시대, 즉 새로운 황금시대가 선거혁명(ballot-box revolution)에 의해 도래한다고 전망한다.

라비 바트라 교수가 말하는 황금시대(New Golden Age)란 교육받은 대중을 기반으로 경제부흥이 일어나 돈이 더 이상 정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아가 부의 집중을 막는 사

3) Roubini Global Economics Monitor <<http://www.rgemonitor.com/>>

4) <<http://www.ravibatra.com/>>

회 시스템이 자리잡는 시대라고 한다. 사회기강이 회복됨에 따라 기술은 더욱 발전하고 실질임금이 상승하며 빈자와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경감되는, 특히 노동자와 여성에게 유리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라비 바트라의 주기설을 적용하여 한국 사회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전해 왔고 어떻게 진전해갈 것인지 분석하고 예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을 대강 열거해볼 수 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러한 碩學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렵사리 그 문하에 들어가거나 간간히 출간되는 책을 읽어볼 수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그의 체취까지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부지런하기만 하다면 이들의 學識을 멘터 삼아 미네르바처럼 독학을 해서라도 통찰력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이다.

### 3. 우리의 師表가 될 만한 법학자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가르침을 받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법학자로는 누가 있을까. 각자의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 十人十色으로 추천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국내에서도 유학생들을 통해 종종 소개되고 있는<sup>5)</sup> 하버드 로스쿨의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교수와 UCLA 로스쿨의 린 로푸키(Lynn LoPucki) 교수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가 알기로 이 두 분 교수는 아이비리그가 아닌 변두리의 학교를 나왔음에도 남다른 성실성으로 자기 전공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미국 법조계와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법과 도산법 학자들이다.<sup>6)</sup> 엘리자베스 워렌 교수는 100편이 넘는 학술논문과 6권의 저서를 통해서 그의 주위와 사상에 접할 수 있다.<sup>7)</sup> 최근에는 그녀의 장녀인 아멜리아 티야기(Amelia Warren Tyagi)와 공저로 미국 중산층,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몰락을 다룬 책을 써서 화제를 불러 모았다.<sup>8)</sup>

5) 문유석 판사의 미국 연수기 <A HREF="http://www.mymins.com/sbbs/bbs\_view.asp?index=law-win&page=1&no=210&curRef=210&curStep=1&curLevel=1">; 박훤일의 국제거래법 포럼 <http://onepark.khu.ac.kr/>의 전자출판 코너 참조.

6) 엘리자베스 워렌 교수는 2008년 11월 최근의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경제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의 시행에 따른 미 은행산업의 구조조정 이행상황을 감독하는 의회 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http://cop.senate.gov>

7) 하버드 로스쿨 웹사이트 <http://www.law.harvard.edu/faculty/directory/facdir.php?id=82>

8) 예컨대 The Two-Income Trap: Why Middle-Class Mothers and Fathers Are Going Broke (Basic 2003). 2008년 1월 UC 버클리대 초청강연 동영상을 통해서도 그 주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akVL7QY0S8A>

린 로푸키 교수는 여성적인 이름과는 달리 UCLA와 하버드 로스쿨을 정력적으로 오가면서 담보법(Secured Credit)과 도산법(Bankruptcy Law)을 가르치고 있는 예순이 넘는 유대계 법학자이다. 스스로 官邊이 아닌 在野 법학자임을 자처하고 일련의 저서와 논문들을 통해 미국의 담보제도, 도산법제도를 신랄할 정도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sup>9)</sup> 그가 존경스러운 것은 개인적으로 1980년대 이후 700개가 넘는 미국 도산법 사례의 데이터베이스<sup>10)</sup>를 구축하고 학자는 물론 실무가와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필자가 방문교수로 UCLA 로스쿨에 가서 “그 엄청난 작업을 어떻게 하셨느냐”고 질문하였을 때 “늘 이렇게 혼자 하지요”라는 우문현답을 들었을 뿐이다.

법학자는 아니지만 논문이 아닌 소설책을 통해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독자들을 상대로 영화 같은 재미와 감동적인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존 그리섬(John Grisham) 변호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쇄살인범의 체포를 계기로 사실상 폐지되었던 사형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비등하였다. 필자도 범인 강호선의 죄상은 사형에 처하고도 남지만 “범인 열 명 중의 한 사람이라도 무고하게 처형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 自問을 하게 되었다. 그리섬 변호사가 쓴 「결백한 사람」(*The Innocent Man*)<sup>11)</sup>을 읽고 난 뒤의 영향이다.

그리섬 변호사는 2004년 12월 어느 날 뉴욕타임스(NYT) 부고 난에서 술과 마약으로 슬럼프에 빠진 메이저 리그 야구선수가 오클라호마 고향에 돌아와 빈둥거리다가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에 처해졌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리고 1년 반에 걸친 취재와 집필 작업 끝에 그의 유일한 논픽션 소설을 발간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섬 변호사와 같은 주장을 펴는 단체가 오늘도 사형제도의 폐지, 형사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sup>12)</sup> 미국의 「이노센트 프로젝트」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죄수들이 유전자(DNA) 검사 결과 결백이 입증되어 현재까지 풀려난 숫자가 230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그리섬 변호사도 당시 수사를 담당하였던 검사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 진실이 과연 어떻게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9) 이에 관한 대표적인 저술로는 「도산법정의 실패」(*Courting Failure: How Competition for Big Cases Is Corrupting the Bankruptcy Court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5); “대형 도산사건 자문료의 급증 실태분석”(Rise of the Financial Advisors: An Empirical Study of the Division of Professional Fees in Large Bankruptcies (with Joseph W. Doherty), 82 *American Bankruptcy Law Journal* 141-74, 2008).

10) Web BRD: Lynn M. LoPucki's Bankruptcy Research Database <<http://lopucki.law.ucla.edu>>

11) <<http://www.jgrisham.com/the-innocent-man/>>

12) <<http://www.innocenceproject.org>>

#### 4.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즐거움

인터넷은 개방된 네트워크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서랍 속에 넣어둔 일기장도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읽어볼 수 있게 된다. 오늘날 인터넷은 종종 개인정보(privacy)의 보호 문제를 이슈화 하고 있지만 반대로 별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의 주위와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유력한 매체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누구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베스트셀러(페이지 히트 수로 평가) 작가가 될 수 있다.

법학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스스로 공부하고 깨우친 법률지식과 정보를 그것이 논문이나 강의록이든, 아니면 여행기나 영화평이든 홈페이지<sup>13)</sup>에 정기적으로 올려놓고 있다. 그러한 수고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타인과 나눈다는 자기만족(self-complacency)을 넘어 충분한 보상을 받고도 남는 것 같다.

예컨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영문원고를 보고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학자가 공동연구를 제안해온 바 있으며, 미국 플로리다주의 어느 변호사는 필자 논문의 영문초록에 언급되어 있는 새만금사업에 관한 대법원 판례<sup>14)</sup>에 관하여 그 상세한 내용을 문의해 온 적이 있다. 그의 맨 처음 질문은 이렇게 단순했다. “한국은 람사 협약에도 가입하였는데 어떻게 그에 반하는 판결을 버젓이 내릴 수 있는가?”하는 것이었다. 하급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문에 그에 대해 심리한 것이 언급되어 있어<sup>15)</sup> 당당히 답변하였지만, 우리나라의 법제는 물론 중요한 판결을 보다 알기 쉬운 영어로 외국인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한국의 법률과 제도에도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포털에서는 조회수가 많은 블로그 제작자를 ‘파워 블로거’라 하고

13) 박환일의 IBT Forum. <<http://onepark.khu.ac.kr/>>

14) 영어로 번역된 본건 대법원 판결문(First Draft)은 逐字式(word to word) 영역이어서 외국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http://library.scourt.go.kr/jsp/html/decision/2\\_20.2006Du330.htm](http://library.scourt.go.kr/jsp/html/decision/2_20.2006Du330.htm)>

15) 서울고등법원은 “우리나라가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에 가입하고 1999. 2. 8. 습지보전법을 제정하는 등 갯벌을 포함한 습지를 보호 관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갯벌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하나, 습지보전법 부칙 제3조[매립면허 등을 받은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새만금갯벌은 습지보전법 적용대상인 습지가 아니고 일반적인 습지의 보존가치가 상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기왕의 경제성 평가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05.12.21. 선고 2005누4412 판결).

포털 초화면에 올려놓거나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sup>16)</sup> 법률 부문에서도 미네르바 이상 가는 미국의 라비 바트라 또는 린 로푸키 교수 같은 영향력 있는 파워 블로거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sup>17)</sup>

---

16) 네이버에서는 정기적으로 부문별 파워블로거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http://section.blog.naver.com/sub/PowerBlogAsEvent.nhn?parentGroupSeq=873>>

17) 본고는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국제법무연구」 제13권 1호(2009.2.27)에 수록된 것을 제목의 취지에 맞게 약간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